

보도시점 2023. 7. 14.(금) 11:00 배포 2023. 7. 14.(금) 09:00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국민체감도 및 외부 평가를 거쳐, 6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담당자들에 시상

1 '23 상반기 적극행정 시상식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7.14일(금)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였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인 금융위 서포터즈 12명 위촉

** 민간위원 5인

6.30(금)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결을 통해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하였다.

* 참석위원 : (정부) 김소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명, (민간) 채성용(법무법인 린), 안성배(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황현아(보험연구원), 김소연(서울대 소비자학과), 김경훈(홍익대 경제학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들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하였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2 수상 사례 주요 내용

이번에 선정된 6개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금융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한 2건의 사례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불안에 대응하고 주거안정·재기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지원과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관계기관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 2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실손 청구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기반을 마련(‘23.6.15일,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한 사례와 ‘92년 도입 후 약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그 외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 M&A 개선방안 마련 및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사업도 좋은 반응이 있었다.

3 금융위원장 격려 말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우수공무원 선정 정책사례들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되찾는데 기여한 선제적인 정책과, 오래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한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본다”고 격려하면서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적극행정으로 각자 자신들이 매일매일 수행하는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홍수정 (02-2100-2801)
		담당자	사무관	박예슬 (02-2100-2804)



사례	주요 내용
<p>「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지호 사무관)</p> <p>우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유예를 유도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 (성과) 금감원·캠코·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전세사기특별법' 제정(6.1일) 전 기일이 임박했던 경매 386건을 유예해 피해자 강제퇴거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하고, 정상적 금융생활·주거안정·재기를 지원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시행 ○ (적극행정) 특별법 제정 전에는 채권자에게 경매유예를 요청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며, 피해자 전세대출이 연체되면서 신용상 불이익 등 파생되는 피해가 컸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쉐 금융권 경매유예 협조요청공문, 금감원 매각·경매 현황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금융권(채권자) 설득, 캠코 채권매입협의 등 경매유예 조치시행 -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신청원), 잔여 전세대출채무의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프로그램(주금공·SGI)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과 새로운 주거자금마련에 필요한 제반조치 시행 - 금리(3%)·만기(최장 50년)우대가 적용된 특례보증자리론(주금공), 경매낙찰 및 신규 주택 구매시 LTV·DSR 대출규제 완화, 저소득저신용 피해자 대상 3%대 미소 금융(서금융) 등으로 피해자 주거마련·생활자금 등 재기 지원
<p>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 대응 (이정찬 사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관계기관 정책공조 및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작년 하반기 변동성이 심화된 채권·단기자금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 ○ (성과) 확대되었던 회사채·CP 스프레드가 금년 들어 하락 후 안정세 유지중이며, 국내외 언론, 국제기구*, 신평사** 등에서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대응노력을 높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3.4.11)] : 한국정부의 시장안정 조치가 금융시장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 [Fitch (23.3.13)] : 정부와 한은의 신속한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국내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평가 ○ (적극행정) 실무 컨퍼런스콜 회의, 금융현안 점검회의 등 관계기관 합동 24시 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소통·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게 이견을 해소하고 적시성 있는 종합 시장 안정대책 발표·시행

사례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실손청구 전산화 (유원규 사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소비자가 실손 청구서류를 전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송부하도록 근거 마련 ○ (성과)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23.5.16일) →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3.6.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병원 진료 후 병원에 요청 시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법 통과 후 1~2년 후 시행) - 관련 법안을 14년만에 논의하여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적극행정) 의료·보험업계 등 다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논의 등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플랫폼정부 TF와 함께 보험·의료계 등이 참여한 TF 회의 운영('22.10월~'23.5월) 등을 통해 청구전산화 쟁점 등 논의 - 실손 청구간소화를 위한 이해관계자(금융위·복지부, 의료·보험, 소비자단체 등) 협의체 구성('23.3월~) 등을 통해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 등 쟁점 논의
<p style="text-align: center;">「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심원태 사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증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없이 바로 증권사에서 거래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선 ○ (성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6.13일), 금융투자업규정(7.5일) 개정이 완료되어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글로벌 투자자 및 다수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적극행정) '92년 도입되어 약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등록제를 폐지하고,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참여 TF 운영('22.6월 ~ '23.1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22.11월), 제6회 금융규제 혁신회의 논의('23.1월)를 거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세부방안 마련 - 글로벌 투자자에 대한 정책 홍보를 위해 외신기자 간담회 개최(2월), 글로벌 투자자 IR 개최(2·3·5월), 영문보도자료 배포(1·6월) -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

사례	주요 내용
<p data-bbox="245 633 416 792">「기업 M&A 지원방안」 마련 (이영민 사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443 338 1423 517">○ (내용)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기업 M&A 지원을 위한 4대 분야 13개 지원방안 마련('23.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480 439 1423 517">- 기업 공개매수시 자금조달 부담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대출 여력 확대, 합병가액 산정방식 자율화 등 M&A 관련 규제 개선 <li data-bbox="443 551 1423 775">○ (성과) M&A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혁신기업이 인수합병시 미래가치를 포함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480 651 1423 685">- 대부분 법령 개정이 요구되나, 즉시 시행 가능 방안은 바로 시행해 성과를 창출 <li data-bbox="480 696 1423 775">*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공개매수자금 확보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방안」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23.4.1일부터 시행 중 <li data-bbox="443 808 1423 1088">○ (적극행정) 다양한 법률에 중층적 규제가 존재하며 기업계, 금융권, 법조계, 학계, 투자자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 규제개선에 다양한 어려움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480 909 1423 987">-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 의지 표명을 바탕으로, 전문가 릴레이 회의 등 폭넓은 소통을 추진하였으며 공감대가 형성된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선발표시행 <li data-bbox="480 999 1423 1077">-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 예외범위 확대와 같이 M&A 지원을 위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방안도 포함
<p data-bbox="245 1529 416 1653">「청년도약 계좌」 사업 (윤세열 사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443 1305 1423 1429">○ (내용)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기획에서부터 예산편성, 관계법령 개정, 상품 설계, 전 과정에 걸쳐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상품을 출시 <li data-bbox="443 1462 1423 1731">○ (성과) 위기 속 적극적 부처 협업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현실화하여 상품의 지원효과를 높이는 등 청년들의 원활한 가입 및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480 1597 1423 1675">- 정책상품 최초 정부기여금에 이자를 부여하는 구조로 설계해 가입자에게 추가 지원 실시 <li data-bbox="480 1686 1423 1731">- 금융상품 최초 병무청과 전산 연계로 병적이행서류 비대면 제출 가능 <li data-bbox="443 1753 1423 1877">○ (적극행정) 정부 재정 없이도 상품 지원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 전문가들까지도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상품을 설계